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3년 7월 12일

# 충청북도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7월 12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의2)
  -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에만 배치하던 사항을 의장이 필요할 경우 타 부서에서도 배치할 수 있도록 확대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제1항 “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”를 “『지방자치법』  
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)은 업무능력과 전공분야  
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우선 배치한다. 단, 의장이 의회운영에 필요  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외 타 부서에도 배치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위원회에 <u>정책지원관을 둔다.</u></p> <p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li> <li>2. 충청북도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li> <li>4. 의원의 정책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li> <li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 지원</li> <li>6.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li> </ol> <p>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부 칙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)은 <u>업무능력과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우선 배치한다. 단, 의장이 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외 타 부서에도 배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부 칙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# 관계 법령

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-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-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-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